

여비 지급 기준

□ 국내 여비 기준

(단위: 원)

구 분	교 통 비				일반 여비				
	비행기	철 도	버 스	승용차	숙박비 (1泊)	일 비 (1日)	식 비 (1食)	현지교통비 (1日)	일반여비합 (식비 3식)
연구보조원	Economy Class	KTX 일반 새마을 일반	우등	별도 기준 정액 지급	70,000 이내	19,000 이내	7,000 이내	11,000 이내	121,000 이내

< 세부 기준 >

- 대중 교통수단(선박 포함)의 교통비는 국토해양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 요금을 적용하며, 이때, 비행기 요금은 여행사 invoice금액을 인정
-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의 교통비는 별도 기준표에 의해 거리별 정액 지급
-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현지교통비는 지급할 수 없음
-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4인 1대 기준
- 승용차의 주차요금은 일비 및 교통비에 포함된 층당(별도로 산정 할 수 없음)
-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

□ 국내 여비 기준 (승용차 이용시)

연번	출장지	왕복교통비 (110%반영) 천원미만 절사	산출근거					비고
			거리	연료비(A)	통행료(B)	편도합계 (C=A+B)	왕복(C×2)	
1	경기	20,000	60	9,200		9,200	18,400	시내교통비
2	천안	42,000	75	15,000	4,200	19,200	38,400	
3	청주	64,000	118	23,600	5,900	29,500	59,000	
5	대전	82,000	151	30,200	7,500	37,700	75,400	
4	춘천	89,000	165	33,000	7,900	40,900	81,800	
6	전주	116,000	196	39,200	13,700	52,900	105,800	
7	강릉	119,000	224	44,800	9,700	54,500	109,000	
8	구미	126,000	237	47,400	10,300	57,700	115,400	
9	광주	161,000	280	56,000	17,300	73,300	146,600	
10	대구	189,000	297	59,400	26,700	86,100	172,200	
11	진주	175,000	326	65,200	14,600	79,800	159,600	
14	목포	183,000	334	66,800	16,500	83,300	166,600	
12	경주	183,000	341	68,200	15,000	83,200	166,400	
13	포항	189,000	352	70,400	15,600	86,000	172,000	
15	울산	204,000	382	76,400	16,700	93,100	186,200	
16	부산	221,000	390	78,000	22,500	100,500	201,000	

1) 기준 지점은 서울(양재 기점)
2)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freeway.co.kr)의 고속도로 기준
3)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정액산정 근거이며, 시점별 변동금액이 아님)
4) 연료비는 정액산정 근거이며, 시점별 변동금액이 아님
5) 지역간 출장이나 주어진지 않은 지역으로의 출장의 경우, 이동거리가 상기표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교통비를 적용

- 4인 1대를 기준 (4인 이하일 경우 여비기준 1/2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음)
- 상기표는 승용차 기준이며, 중형차는 승용차 대비 130%, 대형차는 200%를 적용
- 승용차 이용시 현지교통비는 별도로 산정 할 수 없음(왕복교통비에 포함)
- 고속도로 운행차종 구분

차종	해당차량
1종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16인승 이하), 소형 화물차
2종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중형 승합차(17~32인승 이하), 중형 화물차
3종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대형 승합차(33인승 초과), 2축 대형 화물차

학생 해외파견 기준

I. 지원금 지급 원칙

1. 지원금 기준 적용

- 가) 본 해외 학생 파견 지원금은 해외지역으로의 해외인턴십, 해외연수, 글로벌 Co-op 등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실비 개념의 지원금으로 함.
- 나) 지원금 1일 지원액은 상한액이며, 사업단 예산 상황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 액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다) 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야함.

2. 사전계획

- 가)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품의 및 지원기준 및 파견학생에 대한 명확한 선발기준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나) 지원받은 학생은 ①사전계획서(파견지역 및 기간, 주요 활동 계획 등), ②사후보고서(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지원금 지급대상

- 가) 학생 파견 지원금 지급대상은 본교 재학생(휴학생, 졸업생, 수료생에게 지급 불가)이어야 함
- 나) 파견학생에 대한 인솔 및 현지연계를 위한 출장대상 교직원(연구과제여비기준에 따라 출장비로 지급함).

II. 집행원칙

1. 지원금은 사전 품의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은 실비로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신청 및 결과보고서 작성시 필요 서류

- 가) 항공권 및 현지 참가 프로그램의 증빙
- 나) 파견대상자, 파견지역, 파견기간, 파견기관이 명시된 사전계획서 및 현지 활동실적에 대한 보고서

3. 지원금 계산 단위

- 가) 일비, 현지교통비, 숙박료는 일수(日數) 및 박수(泊數) 단위로 계산(단, 기내 숙박은 박수 계산에서 제외)
- 나) 식비는 출발,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매 식수(食數) 단위로 계산
- 다) 현지 체제비등은 일비 성격으로 보고 통합하여 산정
- 라) 해외 여비의 식비는 편의상 1일단위로 기준표에 나타나 있으나, 필요에 따라 매 식수단위로 산정(1일 식비의 1/3을 1식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때에 소수점이 하는 절사

마) 출발, 도착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발일 1식과 도착일 1식을 각각 제외

4.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하고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함. 항공등급은 Economy Class로 제한.(신체적 사정 등으로 사비를 들여 상위등급으로 탑승하는 것은 인정됨)

5. 환율 계산

가) 환율 : 여비산정 당일의 외국환율고시 ‘매매기준율’ 적용

나) 미화 이외의 화폐 : US\$ 환율 적용

Ⅲ. 지원금 지급 세부 기준

구 분 (대 상)	지역 구분	왕복교통비 (항공운임)	일반 여비				1달(30일기준)
			숙박비 (1泊)	일 비 (1日)	식 비 (1日)	지원금(1日)합계	
학생	가 등급	Economy Class (실비)	\$150	\$25	\$80	\$255 이내	\$6,000 이내
	나 등급		\$100	\$25	\$70	\$195 이내	\$5,000 이내
	다 등급		\$80	\$25	\$60	\$165 이내	\$4,000 이내
	라 등급		\$70	\$25	\$50	\$145 이내	\$3,000 이내

※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30일초과시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원금액의 10분의 2를, 60일 초과시 그 초과일수의 10분의 3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상기 지원금 지급기준은 최고액이며, 사업단 예산상황에 따라 상한액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음.

※ 환율은 여비산정 당일의 외국환율고시 ‘매매기준율’ 을 적용하고, US\$를 기준으로 함

※ 해외 지역별 등급 구분은 여비기준과 동일함.

□ 해외 지역별 등급 구분

등 급	지 역	국가 또는 도시
가 등급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모스크바, 홍콩, 브라질
나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상해, 뉴질랜드, 호주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제시된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지역의 등급은 출장지에서 제시된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